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소병철・백혜련・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선고"를 "선고, 사법경찰관의 불송치"로, "불기소처분" 을 "불기소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불기소처분"을 "불송치"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 관련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제1호) 중 "불기소처분이"를 "불기소가"로 한다.

1.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,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가 있는 경우

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"을 "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"으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"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·제3 호"를 "불송치가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. 제1항제2호의 기소유 예나 제1항제3호·제4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·결정의 확정 당시"를 "제1항제1호·제2호의 불송치·불기소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·제4호의 판결·결정의 확정 당시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중 "제1항제1호"를 "제1항제2호"로, "불기소처분: 그 처분일"을 "불기소: 그날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중 "제1항제1호"로, "불기소처분: 그 처분 시까지"를 "불기소: 그날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중 "제1항제2호"로, "세3호"를 "제4호"로 한다.

1. 제1항제1호의 불송치: 그날부터 3개월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수사경력자료"란 수사자료	6
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<u>선고</u>	<u>선고,</u>
및 검사의 <u>불기소처분</u> 에 관한	사법경찰관의 불송치
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	<u>불기소</u>
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.	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수사자료표) ① 사법경찰관	제5조(수사자료표) ①
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	
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	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에	
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사법경찰관이 수리(受理)한	2
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<u>불기</u>	불송
<u>소처분</u>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	<u> </u>
의 피의자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	제6조(범죄경력조회・수사경력조
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수사	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
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	
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	

는	다음	÷ 2	각 :	호으	븨	어	느	하	나	에
해대	강하	는 .	경우	-에	-	1	전년	丰	또	느
일그	루에	대	하여]]	조호	到	목	적ㅇ	1	필
요현	한 최	소	한으] 1	범 의	위여	ll 서	Ö	탈 .	수
있ા	7.	<딘	낸서	신	설	>				

- 1. ~ 10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.

<신 설>

- 1. 검사의 혐의없음, 공소권없음,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
- 2. · 3. (생략)

다만, 제8조의2제2항제3호
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
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 관련
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 및 회
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
한정한다.
1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
①
1.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, 공소
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
치가 있는 경우
<u>2</u>
불기소가
<u>3</u> .• <u>4</u> 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 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·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,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: 즉시 삭제. 다만,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·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제1항</u>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· 결정의 확정 당시 「소년법」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<신 설>

1. <u>제1항제1호</u>의 기소유예의 <u>불</u> 기소처분: 그 처분일부터 3년

같음)
②
<u>불송치 또는 불</u>
기소가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
<u>결정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불송치가 있는
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, 제1
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
<u>제3호 • 제4호</u>
③ <u>제1항</u>
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ㆍ불기
소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
제4호의 판결・결정의 확정 당
入]

· 1. 제1항제1호의 불송치: 그날부
터 3개월
<u>2. 제1항제2호 불</u>
<u>기소: 그날</u>

- 2.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, 공소 권없음, 죄가안됨의 불기소처
 분: 그 처분 시까지
- 3.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: 그 판결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
- ④ (생 략)

<u>3</u> . <u>제1항제2호</u>	- – –
<u>불기소</u> : 그	1날
<u>까지</u>	
<u>4</u> . <u>제1항제3호</u>	
<u></u> ম <u>া4ই</u>	
④ (현행과 같음)	